

1. 개정이유

정부 외의 자의 기부금이 남북협력기금 재원으로 명시되고 통일부장관이 남북협력기금에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을 심의하여 접수할 수 있도록 「남북협력기금법」이 개정(법률 제19946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기부금 접수 관련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부 외의 자의 ‘기금의 출연’에 ‘기부’를 추가(안 제2조제1항)

나. 기부금 심의·접수 등(안 제2조의2 신설)

통일부장관이 기부금을 접수하는 경우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 접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기부금의 접수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00. 00. ~ 00. 00.)

3) 행정규제 :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기금의 출연)”을 “(기금의 출연 및 기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4조제1호”를 “제4조제1호의2”로, “출연하고자”를 “출연 또는 기부하고자”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기부금의 접수 등) ① 통일부장관은 정부 외의 자로부터 기부금을 접수할 때에는 기부금 용도 등 제반사항에 대해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 접수 여부를 결정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해당 기부금의 접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금의 출연) ① 「남북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에 따라 정부 외의 자가 기금에 <u>출연하고자</u> 할 때에는 납입의뢰서를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기금의 출연 및 기부) ① - ----- --- <u>제4조제1호의2</u> ----- ----- <u>출연 또는 기부하고자</u> ----- ----- --.
②·③ (생략) <u><신설></u>	②·③ (현행과 같음) <u>제2조의2(기부금의 접수 등) ①</u> <u>통일부장관은 정부 외의 자로부터 기부금을 접수할 때에는 기부금 용도 등 제반사항에 대해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 접수 여부를 결정한다.</u> <u>② 통일부장관은 해당 기부금의 접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u>